
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 2021. 7. 9.(금) / 총 16매(본문4, 참고12)		
담당 부서	도시재생 역량과	담 당 자	•과장 오공명, 사무관 임현아, 주무관 이남일 ☎ (044) 201-4917, 4918	
	LH 도시재생지원 기구		•부장 이승규, 선임 제현정 ☎ (042) 866-8328	
보 도 일 시		2021년 7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**도시재생으로 경제활력 불어넣고 일자리 꽃피울**  
**‘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’ 12일부터 신청하세요**  
 -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·금리우대 등 사회적 기업 성장 위한 혜택·지원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7월 12일(월)부터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 분야)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○ ‘예비사회적기업’은 사회적 목적\*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\*\*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,

\*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

\*\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법인·조합, 회사, 협동조합,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

○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,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으로 나뉘어져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‘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’를 시작하였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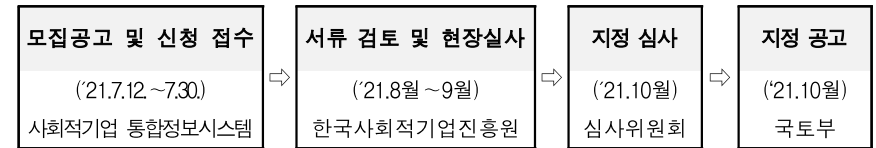
○ ‘20년까지 15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,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.

\*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 : ‘18년 52개, ‘19년 60개, ‘20년 46개

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**조직형태,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의 필수요건**을 충족시켜야 한다. (상세요건 및 심사 기준 ▶ 붙임 공고문 참조)

○ 특히, 올해부터는 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’과 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’이 중복 지정이 되지 않으므로,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절차와 일정은 아래와 같다.



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‘21.7.30(금) 17:00까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seis.or.kr>)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한다.

○ 이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(~9월)를 할 예정이며,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.

□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.

○ (재정지원사업 참여)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, 전문인력 지원, 사업개발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고,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인건비나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(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\*)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 심사 가점(5점), 융자 한도 상향(70%→80%), 금리우대(1.2~1.5%)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\*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공동협업공간, 창업공간, 상가 리모델링, 임대상가 조성 등 사업자에 대한 융자

○ (도시재생예비사업\* 선정 평가)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\*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(2점)\*\*을 부여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\*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으로, 지역활성화와 공동체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점 단위에서 사업 발굴과 추진 전(全) 과정을 수행하는 재생사업

\*\*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

□ 한편,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11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사례집\*을 제작하여,

○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면서 사업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사례를 홍보하였고(‘20.12월),

\*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([www.city.go.kr](http://www.city.go.kr))에서 이용 가능


○ 올해는 도시재생지원기구\*인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

하고자 클라우드 펀딩을 추진하고 있다.

\*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·관리 지원,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

□ 국토교통부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“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”며,

○ “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”고 하였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: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임현아 사무관 (☎ 044-201-4917, 4918), LH 제현정 선임 (☎ 042-866-8328)</li> <li>○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(지정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등)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☎ 031-697-7729, 7723)</li> <li>○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☎ 1661-4006)</li> </ul>
---	--

**붙임**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 공고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- 1043호

##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 공고

「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및 「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2021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2일  
국토교통부장관

### I 지정개요

- **목적:**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원

**<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>**

- ▶ **(사회적기업)**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, 재화 및 서비스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
- ▶ **(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)**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및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업

- **지정기간 :** 지정일로부터 3년

\* 유사사업(마을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 등) 참여 시 지정기간은 「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준용

- **지정 시 지원내용**

-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지원, 전문인력채용지원, 사업개발비지원) 참여 기회 제공 \*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
-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
- 도시재생뉴딜사업,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가점(지자체), 주택 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한도상향 등 \* V. 지원내용 참조

### II 지정요건

◆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「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 준용

- **조직형태**

- 「**사회적기업 육성법**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**조직형태를 갖춘 기업**
  - 1)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  - 2)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  - 3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공익법인
  - 4)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상 비영리민간단체
  - 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사회복지법인
  - 6)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
  - 7) 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- 8)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\*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법인 및 농(어)업회사법인 등

○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,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1)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

-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(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)

\* (예시)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'21년 6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'22년 5월 31일까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
-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

-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
- ②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
-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
2)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
3)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

○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

**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**

- ◇ 모법인으로부터 분리·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,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
- ◇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
  1.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  2.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
□ 사회적 목적 실현

○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

\*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, 취약계층의 범위, 취약계층의 판단기준, 사회서비스 범위는 붙임3 참고

<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(도시재생분야) 대상사업 분야 >

- ◆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
- ◆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
- ◆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마을사업(도시)과 관련된 분야
- ◆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주택임대·관리업과 관련된 분야
- ◆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 관련 사업

<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예시 >

<p><b>건축·주택 분야</b></p> <p>① 집수리 등 소규모 목공업 ② 주택 등 건축물 건설업 ③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임대업</p>	<p><b>경제분야</b></p> <p>① 드론, 물류 등 스타트업 ② 마을카페, 마을식당 등 외식업 ③ 공예품 등 소규모 제조·판매업</p>
+	
<p><b>문화·예술·관광분야</b></p> <p>① 문화관광 등 체험업 (예시: 도시민박, 해설사 등) ② 축제 등 문화예술 기반사업 ③ 공연 및 제작관련 기획업</p>	<p><b>사회·복지 분야</b></p> <p>① 지역연구 및 주민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업 ③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사업</p>

○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

\* 기존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하며,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

○ 단,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(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)

\*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

-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, 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, 임원\*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

\*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

-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, 주 15시간 이상 근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

\*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,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

**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**

- ◇ **사회서비스 제공형:**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- ◇ **일자리제공형:**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
- ◇ **지역사회공헌형:**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
  - ㉠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"지역취약계층"이라고 한다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  - ㉡ 지역의 빈곤, 소외,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  - ㉢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
- ◇ **혼합형:**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
- ◇ 기타(**창의·혁신형**):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□ **영업활동 수행**

-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  - \*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,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
  - \*\*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,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로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
□ **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**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-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-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
-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

**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의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**

- ◇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(어)조합 법인
- ◇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(어)업회사 법인
- ◇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
- ◇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·미술관
- ◇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
- ◇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(단, 보건의료사업은 제외)

□ **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**

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, 직업안정법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
  -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
  - 적용기준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(위반사항 해소 포함)로 판단함
  - \* (예시: '21.4.1. 신청) 신청기업이 '21.2.20.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(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)
  - \* (예시: '21.4.1. 신청) 지정신청 기업이 '21.1.20.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



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

-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(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참고)

### □ 지정제한

- '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'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

-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

- 제한기간 횡수 기산방법: 2017.1.1. 신청 분부터 적용, 부처형·지역형 합산

\* 예시: '18.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신청하여 탈락하였고, 또 그 이듬해 '19.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 결과 탈락하였을 경우,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'20.12월 까지 신청제한, '21.1.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·취소되거나,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·취소·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
\*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

-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
-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
-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
- ④ 그 밖에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임원·근로자 등 구성원,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기업

-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(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지자체,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)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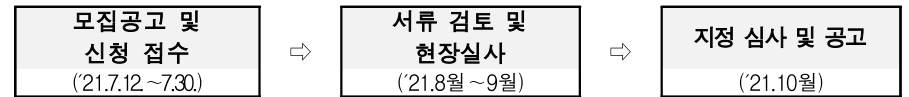
- 기타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'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' 을 우선 준용하며, 지정여부는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

## Ⅲ 지정절차

### □ 지정절차 및 일정

- 서류검토,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\* (절차) 사전 상담 및 컨설팅(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 지원기관) → 지정계획공고(국토교통부) → 신청·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 →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(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 지원기관, LH도시재생지원기구) → 지정심사(심사위원회) → 지정·공고(국토교통부)



### □ 현장실사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현장실사 진행
-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
-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### □ 심사기준

- 「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 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
- ①조직형태, ②사회적목적 실현, ③영업활동 수행,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,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충족여부 심사 \* 모든 요건 충족시 지정 가능
-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,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
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권한이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비공개

□ **지정결과 발표** : 2021년 10월(예정)

- 국토교통부,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

\*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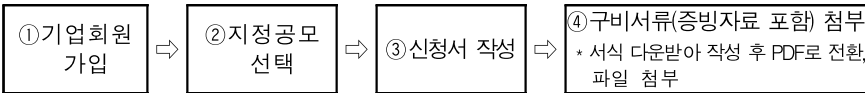
#### IV 접수 및 제출서류

-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([www.seis.or.kr](http://www.seis.or.kr))을 통해 접수

□ **신청기간** : 2021년 7월 12일(월) 09:00 ~ 7월 30일(금) 17:00

□ **신청방법** : 온라인 접수(마감일 17: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)
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seis.or.kr>)



-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“신청서 제출”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. “임시저장”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

-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(전산장애 유의), 온라인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접수만 인정

-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
(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: 1661-4006 (대표번호))

※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,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

□ **제출서류**

- 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<별지 제1호서식>
-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<별지 제2호서식>
-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\*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등기부등본)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(해당기업만 제출)
  - \*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(홈텍스 발급)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
-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<별지 제2호의2~제2호의6호서식> 및 구비서류 (해당기업만 제출)
- ⑤ 유급근로자명부 <별지 제2호의7서식> (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)
  - \*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,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,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, 임금대장(또는 급여명세서)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
-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<별지 제2호의8서식>
- ⑦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
  - \* 사업자등록증명(반드시 제출),
  - \* 재무제표(표준재무제표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세신고내역, 거래처별합계표, 납세증명) 등 (해당기업만 제출)
- ⑧ 정관·규약 등
  - \* 정관·규약은 접수마감일(21.7.30.)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
- 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<별지 제6호서식>
- ⑩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,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
  - \* 지자체,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지원기관에서

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)

\* 접수마감일('21.7.30.)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1) 유의사항

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의함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함

2) 문의처

-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
  -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(전화 044-201-4917, 4918)
-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(지정요건 충족여부, 신청서류 등)
  -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(붙임1 참조)
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전화 031-697-7729, 7723)
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
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(전화 1661-4006)

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

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

- ①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시 지자체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가점(2점)\* 부여
  - \*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항목
- ②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\* 실행을 위한 HUG 보증심사가점(5점) 및 한도상향(사업비의 70% → 80%), 금리우대(1.2~1.5%)
  - \*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공동협업공간, 창업공간, 상가 리모델링, 임대상가 조성 등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
- ③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선정·평가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등 내용을 평가\*에 반영
  - \* 거버넌스 분야 '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' 항목

**V** 지원내용

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

\*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참조  
 ☞ 진흥원 홈페이지 → 소식·자료 → 공지사항 →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다운로드

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